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28
----------	-------

발의연월일 : 2025. 11. 17.

발 의 자 : 유동수 · 강준현 · 이강일
허 영 · 이인영 · 김남근
이연희 · 김현정 · 전현희
허종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송허가제에 따라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단체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송허가제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단체소송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실제 제기된 소송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등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소송허가제 폐지 요구가 제기됨. 아울러 현행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인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의 계속을 그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등도 포함하여 확대하는 등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을 통한 효과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피해구제의 차원에서 그와 동일·유사한 피해사례의 소비자에 대한 선제적·일괄적 피해구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제를 폐지하고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에 예방적 금지청구를 추가하는 등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일·유사한 소비자 피해사례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소비자도 일괄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구제 및 단체소송 제도를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59조의2 및 제72조의2 신설,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등).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중 “피해구제신청의”를 “피해구제신청사건의”로 한다.

제8장제2절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일괄피해구제) ① 원장은 제55조제4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사건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하여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구제의 신청이 없이도 그 사건(이하 “일괄피해구제사건”이라 한다)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괄피해구제에 대하여는 제56조, 제57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신청사건”은 “일괄피해구제사건”으로 본다.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를 “권익의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거나, 그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로 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70조의 단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 또는 그 발생 가능성에 대한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 또는 그 발생 가능성의 증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3조 및 제7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6조제2항 중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을 “제70조에 따라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으로, “할”을 “신청할”로 한다.

제8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70조, 제72조의2, 제73조, 제74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합의권고) 원장은 <u>피해구제신청의</u>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u><신 설></u>	제57조(합의권고) ----- <u>피해구제신청사건의</u> ----- ----- -----. <u>제59조의2(일괄피해구제) ① 원장은 제55조제4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사건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하여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구제의 신청이 없이도 그 사건(이하 “일괄피해구제사건”이라 한다)을 처리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일괄피해구제에 대하여는 제56조, 제57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신청사건”은 “일괄피해구제사건”으로 본다.</u>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 -----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권익
의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거나, 그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

1. ~ 4. (현행과 같음)

제72조의2(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70조의 단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 또는 그 발생 가능성이 대한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

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 또는 그 발생 가능성의 증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제73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

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업자
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범
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70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
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소제기단체가 제74조제1항제
3호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서
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
견서. 다만, 동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
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삭 제>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
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
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
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
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
결이 없을 것

3.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
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
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것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
시항고할 수 있다.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생 략)

②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

<삭 제>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0조에 따라 단체소송을

<u>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u> <u>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의</u> <u>규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u> <u>있다.</u> ③ (생략)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 다. 1. ~ 4. (생략) <u><신설></u> ② (생략)	<u>제기하는 단체는</u>----- ----- -----<u>신청할</u>-----. ③ (현행과 같음) 제86조(과태료)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7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u> <u>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정보</u> <u>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u> <u>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u> ② (현행과 같음)
---	--